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65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4. 3. 11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조례 명칭에 ‘치안협의회’를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, 달성경찰서의 소관부서 변경을 반영하고 운영 사항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수정

- (당초)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- (변경)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나. 복지 및 보호 대상으로서 노인을 명시화(안 제2조, 제3조)

다. 지역치안협의회 간사 담당 규정 변경(안 제5조)

라.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주기 변경(안 제6조)

마.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정비(안 제7조)

바. 협의회에서 심의·의결된 사항의 집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 조항 추가(안 제8조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4조(※ 붙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입법예고(2024. 2. 1. ~ 2. 21.) 결과 : 의견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제2호 중 “아동·청소년·여성”을 “아동·청소년·여성·노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범죄예방”을 “범죄 및 사고 예방”으로 한다.

제3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안전예방”을 “범죄 및 사고의 예방과 관련된”으로 한다.

1. 아동, 청소년, 여성 및 노인 복지 분야 전문가

제5조제1항 중 “경무과장”을 “지역치안협의회 담당 부서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“서면”을 “서면 또는 온라인”으로 한다.

-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나 부의장의 요청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실무위원과 위촉직 실무위원으로 구분하
되, 당연직 실무위원은 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 과
장급으로 하고, 위촉직 실무위원은 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소속기관·단체
협의회 업무 실무자(과장급)를 원칙으로 하되, 실무협의회 안건의 경중에
따라 소속기관·단체 협의회 업무 담당 팀장(계장) 또는 담당자로 할 수
있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지원) 군수는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협
의회에서 협의·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
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협의회 설치 및 기능) ① (생략) ② (생략) 1. (생략) 2. <u>아동·청소년·여성</u>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3. <u>범죄예방</u> 에 관한 사항 4.~5. (생략) ③ (생략)	제2조(협의회 설치 및 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아동·청소년·여성·노인</u> ----- ----- 3. <u>범죄 및 사고 예방</u> ----- 4.~5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제3조(구성) ①~③ (생략) ④ (생략) 1. <u>아동, 청소년 및 여성복지</u> 분야 전문가 2. <u>안전예방</u>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회단체 대표자 3.~4. (생략) ⑤ (생략)	제3조(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 1. <u>아동, 청소년, 여성 및 노인 복지</u> ----- 2. <u>범죄 및 사고의 예방과 관련된</u> ----- 3.~4. (현행과 같음) ⑤ (현행과 같음)
제5조(간사)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대구 달성경찰서 <u>경무과장</u> 으로 한다. ② (생략)	제5조(간사) ① ----- ----- <u>지역치안협의회 담당 부서장</u>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회의)	제6조(회의)

① (생략)

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반기별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.

제7조(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)

① (생략)

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매년 1
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
며 임시회의는 재적 3분의 1 이
상의 위원이나 부의장의 요청
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
는 경우-----.

③ -----

----- 서면 또는
온라인 -----

제7조(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실무위원과 위촉직 실무위원으
로 구분하되, 당연직 실무위원은
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협의회
업무 담당 부서 과장급으로 하
고, 위촉직 실무위원은 협의회
위촉직 위원의 소속기관·단체
협의회 업무 실무자(과장급)를
원칙으로 하되, 실무협의회 안건
의 경중에 따라 소속기관·단체
협의회 업무 담당 팀장(계장) 또

③ (생략) 제10조(지원) 군수는 협의회 조직 과 활동에 대하여 <u>행정적으로</u> <u>지원할 수 있다.</u>	<u>는 담당자로 할 수 있다.</u> ③ (현행과 같음) 제10조(지원) ① ----- ----- <u>행정적인 지</u> <u>원과 협의회에서 협의·의결된</u> <u>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재정적인</u> <u>지원을 할 수 있다.</u>
--	--

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제3조(경찰의 임무)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
2. 범죄의 예방·진압 및 수사
3. 범죄피해자 보호
4. 경비·요인경호 및 대간첩·대테러 작전 수행
5.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·작성 및 배포
6.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
7.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
8.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

제4조(경찰의 사무) 제1항제2호 자치경찰사무 :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·교통·경비·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
가.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